

성폭력에 대한 대처

성폭력 피해자라면

- 거부사를 명확히 표현하세요.
- 구체적 행위를 언급 하며 행위중단을 요구(말과 글)하고 항의하세요.
- 사건에 대한 자료(증거)를 확보하고, 육하원칙에 따라 기록해주세요.
- 신뢰할 만한 사람(주변지인, 변호사, 관련 전문가 등)과 의논하여 해결하세요.
- 인권센터(성폭력상담소)에 상담을 신청하세요.
- 응급상황에는 여성긴급전화(1366), 해바라기센터(성폭력 피해전담 센터), 병원을 이용하세요.

성폭력 가해자라면

- 『당신의 의도와 무관하게 어느 순간 가해자가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의 길은, 당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는 것입니다.』
- 그 상황이 성폭력인지 아닌지 당신이 판단하지 마세요.
 - 당신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 변명보다는 미안하다고 말하세요.
 - 피해자가 문제가 있었다고 말하지 마세요.
 - 피해자의 분노나 요구를 수용해주세요.
 -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상담소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인권센터 절차방법



※ 피해자가 사건 신고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피해자를 지원하며, 모든 상담내용은 철저한 비밀보장이 됩니다.

센터 업무

- 성폭력 피해사건 및 성고충 상담, 성희롱, 성차별, 스토킹, 데이트 성폭력 등
- 피해자 보호 및 지원
- 가톨릭대학교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피해자의 심리적, 의료적, 법적 해결을 지원합니다.
- 폭력예방교육 및 성문화캠페인

<폭력예방교육 안내>

1. 대학은 관련 법령(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폭력예방교육 진행
2. 학생(대학생, 대학원생) : 1년에 2시간(성폭력, 가정폭력예방교육) 교직원 : 1년에 4시간(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예방교육)
 - ※ 학생의 경우, 2학기 성적확인 필수요건이며, 교직원의 경우 미이수시 승진, 전보, 교육훈련 등의 인사관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신입교직원의 경우 2개월 이내 이수해야 합니다.
3. 이수방법 : 사이버캠퍼스 또는 대면교육

이용방법

성폭력·성희롱 / 인권침해 상담

- 방 문 니콜스관 N118호 인권센터(성폭력상담소)
- 이용시간 월 ~ 금, 08:30 - 17:30
- 전 화 02-2164-4651
- 메 일 humanrights@catholic.ac.kr
- 홈페이지 <https://cuksvcc.catholic.ac.kr/cuksvcc/index.html>

관련기관

- 해바라기 센터 1899-3075
- 범죄신고 112
- 여성긴급전화 1366
-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센터 02-735-8994
- 한국성폭력상담소 <https://www.sisters.or.kr>



인권침해란?

'인권침해'란 성희롱·성폭력 그밖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 가톨릭대학교 대학원생 인권위원회 규정 제2조(정의) 제1호-

성폭력이란?

성폭력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으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성적 불쾌감 혹은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뜻합니다.

강간 같은 물리적 폭력으로부터 불쾌한 성적농담, 음란한 눈빛 등 성적으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합니다. 또한 성폭력에 대한 막대한 불안감이나 공포,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행동 제약도 간접적인 성폭력에 해당합니다.

성희롱이란?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 굴욕감,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고용상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의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 가톨릭대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성폭력과 성희롱을 구분하여 사용할 때 성희롱은 학교 등의 단체에서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적 언행으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노동권,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개념입니다.

※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자신의 몸이나 성적취향 등이 다른 이에 의해 침해되거나 강제적으로 구속되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성폭력·성희롱 유형

1. 교수(강사)-학생간 성폭력·성희롱

- 목시적 혹은 명시적으로 학점이나 논문 통과, 진로 등으로 유인하여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요구, 강요하거나 성폭행하는 경우

- 강의실, 실험실, 연구실 등에서 성추행이나 필요치 않은 신체 접촉을 함으로써 학생의 학업을 방해하거나 거부감을 주는 분위기를 만드는 경우

- 강의실, 연구실 등에서 신체접촉, 데이트 강요, 성적인 모욕을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경우

2. 선후배 혹은 동기사이의 성폭력·성희롱

- 행사(MT, 신입생활영회, 축제)와 강의실, 동아리 등의 활동공간에서 원치 않는 성적 농담, 음담패설 등을 하는 경우

- 선후배 동기관계 등 개인적인 친밀감을 빌미로 동의없이 행해진 모든 성적 접촉, 데이트 강요, 성적 모욕을 주는 말이나 행동

3. 공공장소에서의 성폭력·성희롱

도서관, 화장실, 셔틀 같은 공공장소에서 일어나는 성적 접촉, 성기 노출, 음란물 게재 등

4. 데이트 성폭력

데이트중에 일어나는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적 언행
※ 서로 데이트하는 사이라 해도 상대가 원치 않는 행위라면 그건 친밀감의 표현도 사랑도 아닌 상대를 상처주는 폭력입니다.

5. 스토킹

개인적인 관계를 원치 않는다는 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따라다니며 만남을 요구하거나 개인적인 사실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계속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괴롭힘을 주는 경우

6.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공간(채팅, 이메일 등)에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성적 메시지 전달, 성적 대화 요청, 성적인 사진, 영상, 그림 등을 통해 불쾌감 및 위협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성희롱·성폭력 문제는 일상과 맞닿아 있는 권력관계와 성차별적 문화의 산물입니다. 그러므로 대학 공동체 문화를 보다 평등하게 바꾸어 가려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아래와 같은 언어적, 시각적, 신체적 행동은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음담패설이나 성차별적인 비하의 발언을 반복하는 것
- 타인의 성적인 관계나 성생활에 관하여 소문을 퍼뜨리는 것
- 신체나 외모에 대하여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일삼는 것
- 타인의 신체 특정 부위를 유심히 쳐다보거나 노골적으로 훑어보는 것
-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타인 앞에서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것
- 업무나 교육과 무관한 외설적인 그림, 낙서, 사진 등을 게시하는 것
- 학과, 동아리, 수업 관련 회식 자리에서 술을 따르게 하거나 옆에 앉도록 강요하는 것
- 상대방이 원하지 않음에도 전화나 이메일로 괴롭히는 것
- 안마나 애무 등을 요구하거나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것
- 이익이나 불이익을 조건으로 성적인 만남이나 관계를 요구하는 것

